# 투자권유준칙

2012.01.18

트러스톤자산운용(주)

제정 : 2009.03.02

전면개정 : 2010.12.01

개정 : 2012.01.18

#### 제1편 총칙

####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트러스 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 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권유" 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증권)

####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 편. 투자자 구분 등

## 제4조(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

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 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 다.

##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별지2호]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

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별지2호]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제7조(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별지1호]
- 2)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별지3호]

#### 제 4 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 1장 투자자정보

####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1호]의 투자 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5호] 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별지2호]
- 5)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 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 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 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4) 1항부터 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 2 장. 투자권유

## 제10조(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5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

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4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이를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별지3호]

#### 제11조(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10조 1항에 따른 [별지5호] 기준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지6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 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 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 위
  - (3)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 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 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 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 임계약

#### (다) 신탁계약

-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 에 대한 신탁계약
- 마.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

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바.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 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 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 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제 3 장 설명의무

## 제13조(설명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 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 가.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 자설명서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 5)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제14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설명의무) 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다.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비율

- 라.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마.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2)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 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제15조(집합투자증권의 위험도 분류 등)

- 1) 투자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도는 투자설명서 상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따라 분류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도는[별지4호]의 기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다.
- 2)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별지4호] 의 기준을 참고하여 투자자문대상의 범위 및 투자일임재산의 투자 대상 범위를 정한다.

3)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집합투자 증권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 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 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제 6 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제16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 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 시한 경우
  -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 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 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2)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 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 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 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18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 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증권시장 등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부당한 권유 금지

-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 서는 아니 된다.
-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 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

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 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한다.

-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 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 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 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

- 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 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자.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 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 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u>준수사항</u>)(개정 2012.1.18.)**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 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 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 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1)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 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제21조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 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제외한 금전신탁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5호] 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

- 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u>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u> 관한 사항
- <u>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u> 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신설 2012.1.18)

### 제 7 편 보칙

### <u>제 22 조</u>(점검)

회사는 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원 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호번변경 2012.1.18)

## 부 칙(2009.03.02)

**제 1 조(시행일)**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12.01)

**제 1 조(시행일)**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01.18]

**제 1 조(시행일)**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 [개인]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	보 변경	여부]	□ 기취	트정보와	동일		정보 변경				
PART 1 기초정보	1											
1.고객님의 연령다							세~50 시	네 🗆 51 세	~60 세	□ 61	세 이성	상
2.고객님께서 투지												
□ 6개월 미만 [									미만 [	] 3년	이상	
3.다음 중 고객님:					것입니까	? (중복	응답 가능	5)				
□ 은행 예.적금,					o							
□ 금융채, 신용도 □ 신용도 중간 등						퍼드 드	<b>=</b>					
□ 신용도가 낮은								윽 추구하는	주신형	퍼드 등		
□ ELW, 선물옵션										0		
4. 고객님께서는												
□ 매우 낮은 수준												
□ 낮은 수준		채권의 ㅊ	h이를 구별 <sup>:</sup>	할 수 있	= 정도							
□ 높은 수준			대부분의 금									
□ 매우 높은 수준												
<b>5. 고객님께서 투</b> □ 10% 이하 □												
6. 다음 중 고객님												
□ 현재 일정한 4	누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	지하거니	나 증가함	할 것으로	일 예상				
□ 현재 일정한 4	누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히	가거나 불어	안정할 것	것으로 (	계상					
□ 현재 일정한 수												
7. 고객님의 투자			_									
□ 무슨 일이 있어												
□ 투자원금 중 일 BART 2 의청성 등		수알 수	있나.		□ 기내	수익이	높나면 <sup>3</sup>	위험이 높아.	노 상관	하시 않	겠나.	
PART 2 위험선호 8. 다음 중 고객님		ᄐᅚᅜᅘᅝ	으 기자 자	서며치느	■ エレエレ	O 젊 O		77LO				
(필요시 직원에				걸용이는	ナハハ	πа⊏	十 ブロリ	<b>%</b> [ :				
□ 안정형 [예금				4. 투자원	금에 손	실이 발	생하는 7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지										. 함. 다	·만, 수	익을
	민 손실을 수용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투				있음을 충	분하 인	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디	ㅏ 높은 <i>←</i>	수익을 :	기대할	수
	├준의 손실위험을											
□ 적극투자형 [투							자수익 실	실현을 주구?	함. 투자	자금의	상당부	문을
수석, 수석영· □ 공격투자형 [시	펀드 또는 파생성						: 그 =lml	이르 이케 :	エレスレフレテ	이버도	: All ITL	2
	1성당표 구역률들 적극 수용. 투자											
PART 3 기타	77 10. 17	<u> </u>	<u> </u>	, 1701		- 400	000	памем	1 1 112	709		1
9. 고객님의 파생	상품, 파생결합증	권 또는	파생상품편	드에 투지	·경험은	얼마입니	<b>니까?</b>	□ 투자기:	가 (	년		월)
〈주의사항〉 본	· · · · · · · · · · · · · · · · · · ·									 결과는	고객님	니께서
제공하신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되	l었음을 (	알려드립니	다. 본 <u>1</u>	설문지에	서 수집	된 개인	정보는 고객	님에게	적합한	투자일	임계
약을 제공하기 위	한 기초자료만으	로 활용할	할 예정이며	저희 금	융회사에	의하여	후 기밀로	보호될 것을	을 약속	드립니다	<b>ᆉ</b> .	
PART 1 결과 SC	CORE 합계 -	<	투자자정보	확인〉								
□ 안정형 20	)점 이하	5	본인은 귀사	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은 사항을	확인합	나다.	
□ 안정추구형 20	)점 초과 - 40점	이하 1	.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	보는 분	로인의 투	사목적, 재	산상황	및 투지	l 경험	등의
□ 위험중립형 40	)점 초과 — 60점			정확히 열				한 경우에는	이르 .	ᆲᄮᄓ	토지원	ᅜᅼ
	)점 초과 - 80점	이하						깐 경우에는 수 있다는 점				
□ 공격투자형 80	)점 초과											
PART II 결과			일자 :	년 월	일	/	고 객	명 :		(	서명/연	인)
최종 투자자 리스.		100 -	1 뒤 비 탕 0	1-11-	- III O 6"	027	01 - 73 0	) H174 FF	H 크 포트라 (	O =141	A 01 4	

※ 무사사 무사성모 확인서 의 작성 내용을 나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뉴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역장을 야할 수 있답니다

(투자자정보가	기존 1	정보와 동일	한 경우)	본인은 상기 투자자성보 확인서상의 내용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고 객 명 :	(서명/인)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주) 상담자명 :	(서명/인)

##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성모 면정	! 여부]	□ 기존성모	과 종일	□ 성모	변경	
PART 1 기초정보							
1.고객님께서 운용하려는 :	자금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 잉여자산 □ 사업소득					□ 개인(직원: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2.고객님께서 운용하려는				사지합니까?			
□ 10% 미만 □ 10%이성							
3.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A 1
☐ 6개월 이내 ☐ 6개월						# 🗆 3년 이경	3
<b>4.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b> □ 은행 예.적금, 국채, 조				ਆਂ (ਠਜਰਵ	a 기둥)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				형 펀드 등			
□ 주식, 신용도가 낮은 회					수익을 추구히	하는 주식형펀드	- 등
□ ELW, 선물옵션, 시장수	<u> 우</u> 익률 이상의 4	누익을 추구하	는 주식형펀드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판	!드, 주식 신용	거래 등
5.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실니까?		
□ 매우 낮은 수준							
나은 수준					이느 저트		
□ 높은 수준 □ 매우 높은 수준						저ㄷ	
6.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지하니 기까?
□ 10% 이하 □ 10% 초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_					
□ 20% 이하까지는 손실을	을 감수할 수 있	을 것 같다.	□ 기	대수익이 높[	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기	지 않겠다
8. 고객님의 파생상품, 파성							년 월)
<b>〈주의사항〉</b> 본 투자자 절							
제공하신 정보에 근거하여 약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기							
					1일포 포오필	<u> </u>	김니다.
결과 SCORE 현	¦계 −	〈투자자정보	확인>				
□ 안정형 20점 이하		본인은 귀사이	세 제공한 투자	자정보와 관련	변하여 다음과	· 같은 사항을 <sup>호</sup>	확인합니다.
□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제공한 투자자 정확히 알려드		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 .		발생한 경우	에는 이를 귀기	사에 통지하여야
□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_ 80점 이하	귀사가 : 일자 :				·는 점을 설명 '	
		콘시 · · · · · · · · · · · · · · · · · ·	다 걸 계좌!	ㄹ / 서호 또는 싴!	고 즉 ö . 명확인번호:		(시리/건)
□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보는 본 인 거래시 대한			(서명/인)
위임시 기재사항							, , _ , _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변	 서호	본인고	  의 관계		 전화번호	
" 12 00	1 20 12	_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sup>5</sup>	 트자자저 보 화이	서 자서에 과	.하.이체이 해요	 괴르 의이하i	 		
	1시시 0 포 그런	71 70% L			151. 1청인(본인)		(인)
		<u>트</u> i	<u> </u> 러스톤자산운용				(서명/인)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의	의 작성 내용을 디					E는 신규작성을	
(투자자정보가 기존 정보요	과 동일 한 경우	)	본인은 상기 -	투자자정보 혹	확인서상의 내	용이 변동 없음	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백 명 :	(서명/인)
			트러스토지	·사운용주신호	[사(주) 상담	자명 :	(서명/인)

## (일반투자자)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시장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귀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판단에 따라 투자하여, 이 경우 자본 )및 제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시 원금 손실이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
고	일자: 년 월 일 객의 성명: 성명/인

<sup>\*</sup> 귀하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 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파생상품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투자자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귀사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년 월 일

고객의 성명: 성명/인

#### [부적정 파생상품등 거래 확인]

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회사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년 월 일

고객의 성명: 성명/인

## 집합투자증권 및 <u>투자일임계약</u> 위험도 분류기준(개정 2012.1.18)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편입비율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일임계약상 60%이상인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계약 -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계약 (원금비보장형) - 투기등급(BB등급 이하)채권에 3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계약
2등급	높은 위험	- 주식편입비율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일임계약상 30%이상 60%미만인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계약 -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계약 -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계약 (원금비보장형) - 투기등급(BB등급 이하)채권에 3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계약
3등급	중간 위험	- 주식편입비율이 집합투자규약 <u>및 투자일임계약상</u> 최대 30%미만인 집합투자기구 <u>및 투자일임계약</u> - 회사채(BBB+등급~BBB-등급)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u>및</u> <u>투자일임계약</u>
4등급	낮은 위험	- 국공채 및 회사채(A-등급 이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u>및 투자일임계약</u> - 장내차익거래용 집합투자기구 <u>및 투자일임계약</u>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u>및 <b>투자일임계약</b></u>

#### 일반투자자 투자자성향 및 적합성 판단기준(개정 2012.1.18)

- □ (점수화[Scoring]방식)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확인서 답변 점수화 방법
  - 1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6점
  - 8번 : 배점은 없으며, 투자자의 선택 결과를 적용

#### □ 점수 계산 방법

○ PART 1,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26점/32점 × 100 = 81.3점

○ PART 2 선택 결과를 적용

(예) 안정형, 적극투자형 등

○ PART 1과 PART 2 결과 중 하위 값 적용

(예)- PART 1 적극투자형, PART 2 위험중립형인 경우 → 위험중립형 등급 적용

- PART 1 안정추구형, PART 2 위험중립형인 경우 → 안정추구형 등급 적용
- PART 1 위험중립형, PART 2 위험중립형인 경우 → 위험중립형 등급 적용
- □ 평가 점수에 의한 투자자 성향 분류
  - 점수 계산 결과에 따라 1단계 ~ 5단계 등급 중 부여

.20점이하 : 안정형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 □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가능 위험 등급 최고 한도

<u>구 분</u>		위험 감내도 (투자기간)				
		<u>단기</u>	<u>중기</u>	<u>장기</u>		
	<u>공격투자형</u>	<u>2등급</u> (높은 위험)	<u>1등급</u> (매우 높은 위험)	<u>1등급</u> (매우 높은 위험)		
투자자유형	<u>적극투자형</u>	<u>2등급</u> (높은 위험)	<u>2등급</u> (높은 위험)	<u>1등급</u> (매우 높은 위험)		
	위험중립형	<u>3등급</u> (중간 위험)	<u>3등급</u> (중간 위험)	<u>2등급</u> (높은 위험)		
	안정추구형	<u>4등급</u> (낮은 위험)	<u>3등급</u> (중간 위험)	<u>3등급</u> (중간 위험)		
	<u>안정형</u>	<u>5등급</u> (매우 낮은 위험)	<u>4등급</u> (낮은 위험)	<u>3등급</u> (중간 위험)		

#### 파생상품등 적합성 판단기준

-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5호]의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정함.
-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 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 2.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3.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 2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ul> <li>원금손실률이 20%</li> <li>이내로 제한되는</li> <li>파생결합증권</li> <li>원금손실률이 20%</li> <li>이내로 제한되는</li> <li>파생상품</li> <li>집합투자증권</li> </ul>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만 65세 미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